

# HR Weekly

- 서울시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 1년을 초과하되 2년의 근무기간을 지낸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26개다
- 직무평가 방법 2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무급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 부부간에 열정이 없다면
- 느낌이 있는 공간 (인생을 알고 싶다면)

**급여 관리 Outsourcing**

*Service 품질 1위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HR Shift**

에 이 지 알 시 프 트

[www.hrshift.co.kr](http://www.hrshift.co.kr)

02-3463-9990

# HR News briefing



□농어촌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확대된 신규 도입 비 전문 외국 인력(E-9) 1만명 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가 9/29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중소기업 및 농·축산·어업은 총 고용한도인원이 20~25% 상향되었으며 제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 특례를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출산전후급여를 적용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내용이 보완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임신기간,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 등

□구인·구직·취업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사업장 현황, 실업급여 지급 현황 등 각종 고용행정데이터가 10월부터 개방된다고 합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구인·구직·취업,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으로 표준화·통합해 핵심 기준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용부가 보유한 고용행정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419, 선고일자 : 2022-09-07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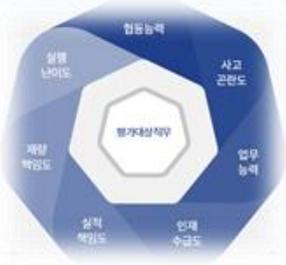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③ 삭제(2017.11.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직무평가 방법 2



지난 회에 이어 이번에는 직무평가방법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직무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 1) 서열법 2) 분류법 3) 요소비교법 4) 점수법

서열법은 직무평가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서, 지난 회에 살펴 본 직무평가요소를 근거로 각 직무간의 상대적인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분류법은 직무기술서를 사용하여 직무를 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영업직 등 중요직종으로 분류한 다음에 각 직종 내의 직무들에 대하여 직무평가요소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기술서를 명확히 규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1급~9급의 체계라 할 수 있다. 분류법은 주로 공공기관, 학교 등 등급분류가 용이한 사무, 기술, 관리직에 많이 적용되며 적절한 등급의 개수는 5~15개 정도라는 것이 연구결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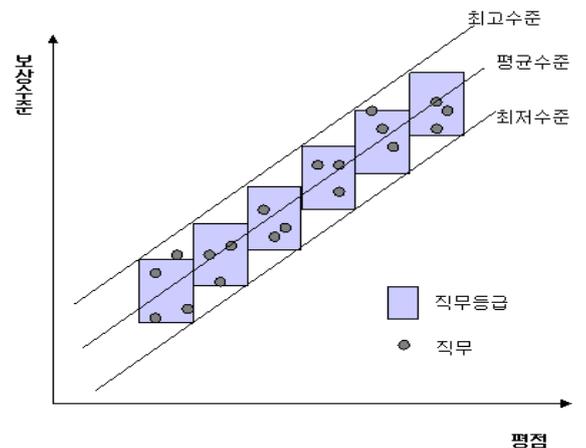
서열법과 분류법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비계량적인 방법인데 반해, 요소비교법과 점수법은 계량적인 방법으로서 직무평가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이 되는 대표직무를 10개 이내로 정리하여 직무가치에 따라 서열을 정한 후에 일반직무의 가치를 대표직무의 가치와 비교하여 상대적 서열을 가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무수가 많은 경우 다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가장 체계적이면서 정확하며 실행하기 편리한 점수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점수법(Point Method)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서 실행을 위해서는 첫째,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각 직무를 직종으로 분류하고 평가될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평가기준표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즉, 직무평가를 하기 이전에 각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배정하고 각 평가등급별 점수를 배정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직무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직무에 해당하는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을 배정하고 이를 합하여 각 직무의 최종적인 평점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평점을 가지고 직무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보상수준에 매핑(이를 임금곡선이라 함)하면 바로 직무급이 설계되는 것이다. 임금곡선을 결정할 때 시장의 보상수준과 자사의 보상전략을 감안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직무평가기준표

평가요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숙련도 (250점)	지식	14	28	42	56	70
	경험	22	44	66	88	110
	리더십	14	28	42	56	70
노력 (75점)	육체적 노력	10	20	30	40	50
	정신적 노력	5	10	15	20	25
책임 (100점)	시설 및 공정	5	10	15	20	25
	제품 및 서비스	5	10	15	20	25
	타인의 안전	5	10	15	20	25
작업조건 (75점)	타인의 직무수행	5	10	15	20	25
	작업조건	10	20	30	40	50
	위험성	5	10	15	20	25

임금곡선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03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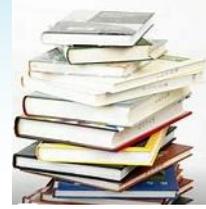
### 질의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 회시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
  - 퇴직금·DB 제도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하고,
    - DC 제도(10인 미만 IRP 특례 포함)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 산정





## 부부간에 열정이 없다면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나 역시 당신 부부가 사랑으로 만나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얼마만큼 오래? 지금 이 말은 웃자고 하는 예기가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둘이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이다. 그런 식으로 함께 사는 것은 고역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서로 간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 둘 사이에 접촉제처럼 강한 유대감이 있어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이해하는 여정으로 채워져야 한다.

사랑은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성가시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꿈과 목표와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당신들은 함께 지내고 싶다는 강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물론 나도 잘 알고 있다. 모든 관계에는 절정이 있으면 권태도 따른다. 특히 남녀관계는 한시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무덤덤해진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징글징글하고 빠져 나온 머리카락조차 보기 싫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와 함께 살고 있다. 이를 위해 관심, 힘, 열정, 노력 같은 덕목이 요구된다. 당신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두 사람의 행복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살고 있는가?

당신에게는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물론 재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도 평생을 같이한다는 전제가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번의 기회, 그것은 당신 부부가 상호적 신뢰와 책임감, 행복,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를 가질 기회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동반자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고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왔을 때 당신과 수다나 떨면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동반자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함께 살고 있다. 동반자에게 당신의 존재가 열정을 가지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부부관계가 왜 필요할까?

읽글출처 :인생잡언/ 세종서적



# 느낌이 있는 공간



## 인생을 알고 싶다면



인생을 알고 싶다면  
숲이 우거진 오솔길을 걸어보라

허리를 숙여야 볼 수 있는  
들꽃에 미소가 주는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알며

때로는 풀벌레의 속삭임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어보라

가끔은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 활짝 열어 목청껏 울어도, 웃어도 보고

오솔길 따라 흐르는  
맑은 시냇물에  
찌든 마음 씻어 용서도 빌어보라

보이지 않는 종착역을 향해 급하게 서둘러 가려만 하지 말고

느림보 달팽이 삶의 철학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으며

시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시간을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은 혼자가 아닌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길 아니겠느냐

- 조만희 -